

자립준비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거비(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의 목적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중(예정 포함)인 대상자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로부터 해당 사무를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자

□ 지원(대여) 규모 및 조건

- ① 지원(대여) 규모 : 전세임대 보증금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② 지원(대여) 기간 :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최초 계약 이후 2년 단위 2회 재계약, 최장 8년)
※ 단, 동 지침 개정시, 변경된 기간을 적용함
- ③ 지원(대여) 조건 : 무이자 지원(대여)
- ④ 지원 시기 : 전세임대 지원 대상주택에 입주 확인 후 신청한 본인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기우편 신청

- 지원대상자는 공사에서 발송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고, 동봉한 신청서류 작성 및 본인 서명(날인) 후 증빙서류를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 ※ 금전대여계약으로 원본서류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여 스캔파일 등 사본수령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14층 주거복지처 전세임대 1부 (우편번호 : 16508)

□ 진행절차 : 서류 확인 후 신청계좌로 신청금액 입금

□ 유의사항

- ① 본 주거비 지원(대여)은 귀하와 임대인, 우리공사 간 체결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차계약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 중 귀하가 부담한 보증금을 경기도가 지원(대여)하는 것으로, 귀하와 우리공사간의 전세임대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될 경우 본 주거비 지원(대여) 또한 종료되며, 이에 본 주거비 지원액의 회수를 위한 우리공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관련 문의

- GH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담당자 : 손성현 과장) ☎ (031) 220-3235